기숙사 학생자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기숙사 학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줄포자동차공업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 인 생활을 위하여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장 자치회 조직 및 활동】

제3조(회원의 자격) 자치회의 회원은 기숙사에 입사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자치회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자치회 임원: 회장, 부회장, 각관 대표 등으로 구성
- 2. 임원의 대표적 임무
- 가. 회장: 자치회 총괄, 자율과 질서를 존중하는 기숙사 생활을 위한 각종 안건 혐의 및 건의
- 나. 부회장: 자치회장 보좌, 회장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회장의 임무 대해
- 다. 부장: 각 관을 대표, 각 관의 관리 및 건의 사항, 연락 사항 전달

제5조(임원 선출 및 임기) 임원 선출 및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1. 임원: 자치회에서 학년 초에 선출(부장은 각 관에서 회장이 임명)
- 2. 회장, 부회장에게는 학교장의 임명장 수여
- 3. 임기: 1년
- 4. 임원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함

제6조(심의 사항) 자치회는 학생들의 원활한 입사 생활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자치적으로 결정하며 다음 각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단, 기숙사 운영 규정의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논의한다.

- 1. 자치회 회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 2. 기숙사 생활 수칙 등에 관한 사항
- 3. 학생의 건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제7조(회의와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회의 개최 일정 등을 사감과 협의한다.
- ③ 자치회 결정사항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봉사활동 시간 부여) 자치회 학생들에게 자치활동 시간만큼 학기별로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한다.

제9조(자치회 임원 주요활동) 자치회 임원이 다음과 같은 기숙사 환경 및 생활 수칙 준수를 확인하다.

- 1. 주요활동: 학우들의 바른 생활 습관 유도, 선후배 간 예절과 공동체 생활 규칙 준수, 민주적인 참여 의식 향상 고취
- 2. 환경미화 활동: 기숙사 내외 환경 꾸미기, 필요 물품 또는 손상된 시설물을 직접 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사감 부장 교사에게 건의(각 방과 자습실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 3. 봉사활동: 기숙사 내 봉사활동 적극 참여
- 4. 쾌적한 자습실 조성 관리
- 5. 자율학습실 · 생활 구역별 확인 활동

구역별	점검활동	확인자(임원)	확인 활동 내용	확인 시간
창의관 공동구역	1, 2, 3층 공동구역	회장	① 생활태도 ② 면학환경 ② 거기기도사미	① 자율학습시간
미래관 공동구역	1, 2층 공동구역	부회장	③ 정리정돈상태④ 절전·소등⑤ 청결상태	② 등교 점호 이전 08:10-08:20
	1층	각 부장	① 현관 정리 ② 숙소 환경상태	③ 수 시
기숙사 생활구역	2층	각 부장	④ 목도 된 경상대 ④ 절전·절수·소등 ⑤ 쓰레기 처리	07:00-08:00 18:30-21:00
	3층 (창의관)	각 부장	⑥ 빨래감 처리	10.00 21.00

【제 3 장 기숙사 생활 수칙】

- 제10조(생활 수칙 제정) ① 기숙사 생활 수칙은 입사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숙사 구성원(입사 학생, 사감)과 이해관계자(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한다.
- ② 생활 수칙 제정 시 반영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예의범절(존중과 배려 등) 반영
- 2. 학생이 주체가 되어 자율성과 협동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
- 3. 학생 간, 학생과 사감 간 상호 존중하는 인권 우호적 규정
- 4. 보건, 안전, 교우 관계 및 올바른 생활 습관, 학습능률 향상, 자신의 문제에 관한 교사와 의 상담. 기타 생활교육에 관련된 내용 등
- ③ 세부적인 기숙사 생활 수칙은 별지로 작성하고, 기숙사 입사 학생 모두가 자치회에서 정한 생활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부칙 】

본 회칙에 대한 개정은 자치회의 의결 사항에 따라 시행하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규칙과 학생회칙에 준한다.

기숙사 생활 수칙

- 제1조(일반적 사항) 기숙사는 공동생활 장소이므로 학생은 다른 사람의 생활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 1. 다른 사람의 생활 존중 및 배려
- 2. 질서유지
- 3. 개인의 취미 활동이나 건강관리 활동은 다른 사람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
- 4. 기숙사 운영 규정 준수 및 사감의 지도 존중
- 5. 잡상인의 출입, 폭력 발생, 응급환자 발생, 기타 긴급 상황 등 발생 시 즉시 사감 등에게 알림
- 6. 특정 질환이 있는 학생, 특이 체질 학생, 특정 약을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학생 등은 반드시 사감에게 알림
- 7. 폭력 행사 금지
- 8. 기숙사 출입 시 반드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신고
- 9. 몸 청결 유지, 개인 의류 관리 철저(악취 발생하지 않도록 함)
- 10. 생활 불편사항 발생 시 사감 등 기숙사 관리자에 알림
- 11. 음주, 흡연, 약물 오·남용 금지
- 12. 학교에서 제공한 전기용품 외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랜턴 등 용품 사용 시 학교에 미리 승인요청
- 13. 촛불 점등 행위 금지
- 14. 호실 공용물품 수시 확인, 훼손 상태 발견 시 즉시 사감에게 신고(인위적 훼손 의 경우 호실 구성원이 공동 책임으로 변상)
- 15. 창문 밖으로 휴지나 기타 이물질 투척 금지 (방충망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방충망의 임의 조작 금지)
- 16.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 투척 금지
- 17. 등교 또는 퇴실 시 냉난방기기 및 전등 소등
- 18. 호실에 비입사 학생 출입 금지
- 19. 현금 등 귀중품 호실 내 보관 금지
- 20. 기숙사 시설물 임의변경 및 보조물 설치 금지(부득이한 경우 학교 승인 필요)
- 21. 성냥, 라이터, 초 등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 물질 반입 금지
- 22. 화투, 카드 등 행위 금지
- 23. 비상상황 발생 시 각층 비상탈출구를 이용하여 탈출

제2조(정독실, 도서열람실 이용)

- 1. 지정석 이용, 열람대 깨끗이 사용 및 낙서 금지
- 2.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 3. 입실 시 휴대전화 전원 끄기
- 4. 음식물 반입금지
- 5. 어학용 학습기기 등은 헤드셋 사용

제3조(컴퓨터 이용)

- 1. 게임. 만화 등 동영상 시청. 기타 학습과 관련 없는 용도 사용 금지
- 2.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 프로그램 사용 금지, 필요시 지도교사에게 미리 상의
- 3. 개인 자료는 반드시 별도 개인용 저장 장치 이용
- 4. 음식물 섭취 금지
- 5. 설치된 프로그램 소중히 사용, 사용 중 문제 발생 시 사감에게 신고
- 6. 노트북의 인터넷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경우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강의 등은 가급적 미리 다운로드하여 사용
- 7.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 주의

제4조(휴게실 이용)

- 1. 당구장 이용 규칙 준수
- 2. 음식물 섭취 시간 준수
- 3. 당구 및 게임 시설 안전하게 사용하기
- 4. 당구 및 게임 시설 파손 시 변상
- 5. 음식물 쓰레기 전용통에 버리기
- 6. 정리 정돈 철저히

제5조(세탁물 관리)

- 1. 세탁물은 개인용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고 개인적으로 지정된 요일과 시간, 장소에서 세탁(부득이 해당일이 아닌 때 세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른 호실 에 양해를 구함)
- 2. 개인 의류는 이름 표기(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쉽게 구분 가능하게 함)
- 3. 세탁물 건조는 지정된 장소에서 함

제6조(외박과 외출)

- 1.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함(특별한 경우 사감의 허가 후 실시)
- 2. 외박 희망 학생은 외박 신청서 제출,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 해야 한
- 3. 외박 장소 변경 시 사감에게 알려야 함
- 4. 외출 희망 학생은 외출신고서 제출
- 5. 외출 학생은 규정된 귀사시간 준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시간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사감에게 미리 알림)

6. 종교 행사, 학원 수강 등 정기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나 학생이 미리 신청서 제 출

제7조(입사 시 준비물)

- 1. 침구류: 이불(1인용 침대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 커버
- 2. 의류: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은 피할 것
- 3. 세면도구(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와 기초 화장품, 개인용 컵 등
- 4. 학습 자료: 교과서, 필요시 USB 등 개인용 저장 장치
- 5. 현금: 가급적 현금 소지 최소화, 개인이 원할 경우 사감실에 위탁
- 6. 개인용 실내화: 기숙사용과 학교용 별도 구입
- 7. 개인용 세탁물 바구니
- 8. 학습용 전자기기(노트북 컴퓨터 등)

제8조(칭찬 제도)

항	내 용		칭 친		
L	٦١ ٥	20	15	10	5
1	선행, 모범, 효행과 관련된 교외상을 받는 경우	•			
2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여 읽고, 독후감 (600자 이상) 제출한 경우	•			
3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개당)[단.20일 이내 신청건만 등록]		•		
4	기능사 필기 시험 문제 10회차(600문제) 출력하여 풀고 제출 하고, 제출한 문제중 1 회차 60문제 출제하여 40문제 이상 맞출 경우		•		
5	교과, 선행, 모범과 관련되어 학교장상을 받는 경우		•		
6	한달 아침 식사를 한 경우(15회 이상) 본인 증빙(최대 연중 3번, 아침식사 일지 제출)		•		
7	격려점이 30점 이상이 되었을 때, 기숙사내 봉사활동 10일을 이행한 경우			•	
8	매월 Best Room으로 선출된 호실의 학생인 경우			•	
9	자격증 이론 시험에 합격한 경우(개당)[단. 20일 이내 신청건만 등록]			•	
10	기숙사 환경 미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숙사 사감이 적극 또는 추천한 경우(중복 불가)			•	•
11	격려점이 20점 이상이 되었을 때, 기숙사내 봉사활동 5일을 이행한 경우				•
12	기숙사 내 자율 학습 시 학습대도가 바람직하여 기숙사 사감이 추천한 경우				•
13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담당 교사가 추천한 경우				•
14	기숙사 회장과 부회장으로서 한 달간 벌점이 전혀 없이 근무한 경우				•
15	각 부장으로서 한 달간 벌점이 전혀 없이 근무한 경우				•
16	누적 점수로 포상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점수를 차감할 수 있다.(학생 동의 시)	해	당 점	수 ㅊ	- -

			<u>フ</u> :	1 2:	_	_
항	내 용	즉각 퇴사	20	15	10	5
1	폭행(아무런 조치 없이 같이 있는 경우 포함), 성희롱 및 성폭행 행위	•				
2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을 흡입하는 행위	•				
3	학교내 흡연, 음주 행위	•				
4	기숙사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금품 갈취 행위					
5	일탈행동(야간 점호 후 외출, 호실 이동)으로 통제 밖에 노출된 학생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					
7	격려점수 50점 초과인 경우					
8	불장난 및 방화 관련한 행위(장난도 포함)	•				
9	사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 또는 불손한 언행을 한 행위		•			
10	학교 주변에서 흡연, 노상 방뇨, 무단 거주 침입 등 민원을 발생한 행위		•			
1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아이디 비번 등) 요구한 행위		•			
12	통학생을 기숙사에 출입하게 하는 행위		lacksquare			
13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파손하는 행위 (변상 조치 후 격려점수 부과)					
14	학교 일과 시간 중에 허락 없이 기숙사를 출입(잔류)하는 행위		lacksquare			
15	배정된 담당 구역의 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lacksquare			
16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숙사 출입하는 행위					
1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숙사 방과후 및 야간자율학습에 불참하는 행위		•			
18	허가 없는 전열기 (전기장판,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등) 사용 행위			•		
19	학교 주변 통행인 및 부녀자(여학생 포함)를 희롱하는 행위			•		
20	담배(전자담배 포함)나 라이터를 소지하는 행위			•		
21	도박(사이버 포함) 등의 사행 행위			•		
22	무단 외출하거나, 호실에서 고성방가 등의 소란 행위(누군지 모르면 호실 전체)			•		
23	정당한 사유 없이 매월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가 2회 초과인 경우				•	
24	껌, 침을 바닥에 뱉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25	욕설, 대리 대답, 불미스러운 언행을 하는 행위				•	
26	점호 불참 및 시간미귀, 거짓 보고(거짓말)를 하는 행위				•	
27	허위로 특박(전화 특박 포함) 및 귀사 연장을 하는 행위				•	
28	소등시간 이후 소등하지 않는 행위				•	
29	23:30이후 핸드폰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잡담, 오락하는 행위				•	
30	특박 또는 귀사연장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숙사에 미복귀한 경우(1회당)				•	
31	슬리퍼를 착용하고 등교 및 실외로 통행하는 행위				•	
32	취침시간(23:00) 이후에 화장실, 샤워실, 급수대 이용 및 배회하는 행위				•	
33	호실 내에 음식물을 반입・취식 흔적 발견 및 행위 (단, 휴케공간에서만 시식 가능)				•	
34	용의나 복장, 침대 이부자리 정리 등이 불량한 행위				•	
35	같은 호실 비밀번호를 임으로 바꾸고 공유하지 않는 행위(문 잠김 등)				•	
36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한 경우				•	
37	음란 서적을 탐독하거나 풍기 문란한 행위					•
38	타 호실을 출입하는 행위, 또는 물품을 관리하지 않는 행위					•
39						•
40	허가 없이 전기를 배선하는 행위					•
41	기타 기숙사 생활의 기본 생활 규정을 위반한 행위					•
	① 격려기준 외에 격려가 필요할 만한 행위를 한 자는 사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계 할 수 있다.					7
ыl	② 격려사항 중 학생 선도 규정에 위배될 때에는 인성인권안전부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③ 본 학교생활 에티켓 내용은 퇴사 시까지 누진 적용한다. ④ 위 내용으로 퇴사한 학생은 퇴사일부터 최소 6개월 이내 재입사할 수 없다.			\rightarrow	\langle	
	⑤ ④항의 불구하고 학교 생활이 모범이 되거나 개선의 의지가 분명한 학생으로 담임의	추천	/		/	\
	이 있을 경우 사감회의를 통해 재입사 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할 수 있다.		\vee			\setminus

[별표1]

★ 기준표 ★

구 분	누적 점수	관련 내용	선도 내용	비고
	-20점 이상		봉사활동 5일 후 격려 5점 차감	봉사활동 기간 중 사감 추천 칭찬(9번) 점수는 획득할 수 없다.
	-30점 이상		봉사활동 10일 후 격려 10점 차감	총사감이 담임교사에게 통보 및 연계지도
선도용	-40점 이상	보호자에게 전화 통보	봉사활동 20일 후 격려 20점 차감	총사감이 담임교사에게 통보 및 연계지도
	-50점 초과	보호자에게 전화통보 후	즉각 퇴사	총사감이 담임교사에게 통보 /
	흡연, 음주, 폭행(영구 퇴사)	^선 와 중도 구 퇴사	영구 퇴사(폭행)	6개월 퇴사 후 재입사 가능(폭행 제외)

^{*}편의 상 칭찬: +, 격려: - 로 표시한다.

[별표2] ★ 기숙사 재입사 심사 기준 ★

		심사 기준	
6개월 퇴사 학생 대상	1. 담임 추천서 ① 평소 학교생활 태도 ② 학교생활(기숙사 생활 포함) 계획서 작성 제출(학생 작성) (①에 관한 퇴소 후 최소 2개월 이상 학생에 대한 담임 의견 첨부)	2. 퇴사 기간(6개월) 내 학교생활선도위원회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회부 여부 (단, 회부시 3개월 입사 유예)	3. 사감 회의 (그 외 사안에 관한 입사 심사 포함)

^{*}위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재입사 가능

[별표3] ★ 기숙사 봉사 활동 매뉴얼 ★

. –	
항	내 용
1	기숙사 실내 바닥 물청소, 껌 떼기
2	기숙사 화장실 청소
3	기숙사 휴게실 및 분리수거와 주변 청소
4	기숙사 신발장 청소
5	기숙사 사감실 청소
6	기숙사 청소도구함 청소
7	기숙사 각 호실 출입구 창틀 청소
8	기숙사 내 모든 쓰레기통 비우고 깨끗이 씻기
9	기숙사 자율학습실 정리 정돈 청소
	기숙사 배란다(앞 뒤) 청소
-	기숙사 주변 하수구 청소
	기숙사 주변 쓰레기 줍기
_	학교 주변(마을회관, 정자 등) 쓰레기 줍기
	강당 주변 하수구 청소
	강당 주변 쓰레기 줍기
	강당 화장실 청소
	강당 세면장 청소
	강당 헬스장 정리 정돈 청소
	강당 물품 정리 정돈 청소(체육활동 장비 등)
_	급식실 주변 쓰레기 줍기
-	급식실 입구 ~ 2층 자율학습실 계단 청소 실습장 주변 쓰레기 줍기
	물급당 우린 쓰내가 몹기 정문 ~ 마을 회관 쓰레기 줍기
	실습장 화장실 청소
25	특성화 교실 정리 정돈 청소
26	도장실습실 정리 정돈 청소
27	
28	
29	재료 준비실 정리 정돈 청소
30	본관 정수기 및 주변 정리 정돈 청소
31	본관 화장실 청소
	특성화 교무실 정리 정돈 청소
-	본관 쓰레기 분리 수거함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34	청소기 및 청소 도구 수리와 세척
35	실습장 탈의실 청소
36	공용 세탁기 주변 청소
37	매일 반성문 쓰기(A4 한 장)
	① 기타 사감 및 교직원의 필요에 의해 지정하는 장소나 행위
비고	②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체육대회, 축제, 신입생 면접, 등)
	③ 급식실에 필요한 지원 활동

제10조(기숙사 시정표)

2023학년도

	023학 근포						
순	시 간	내 용	비고				
1	07 : 10 - 07 : 20	기상 및 점호					
2	07 : 25 - 07 : 55	아침 식사, 세면					
3	07 : 55 - 08 : 20	호실 정리 정돈 후 등교 점호					
4	08 : 20 - 08 : 30	학교 등교					
5	08 : 30 - 16 : 30	학교 생활					
6	16 : 30 - 18 : 10	일반 방과후 활동					
7	18 : 10 - 18 : 40	저녁 식사					
8	18 : 40 - 19 : 00	점호					
9	19:00 - 20:40	기숙사 방과후 활동					
10	20 : 40 - 21 : 30	자유 시간					
11	21 : 30 - 22 : 00	청소					
12	22 : 00 - 23 : 00	각 실 점호 후 자율 학습 시간					
13	23 : 00 - 07 : 10	취침 및 기상					
ㅠ 교	※ 정독실 24시까지 운영(단, 시험 1주일 전 1시간 연장 운영)※ 시험 1주일 전 미래관 정독실 및 특성화 강의실 운영						

제11조(기숙사 학생 자치회 점검 활동)

구역별	점검활동	확인자(임원)	확인 활동 내용	확인 시간
창의관 공동구역	1, 2, 3층 공동구역	회장	① 생활태도 ② 면학환경 ③ 정리정돈상태	① 자율학습시간
미래관 공동구역	1, 2층 공동구역	부회장	(3) 정디정근경대 (4) 절전·소등 (5) 청결상태	② 등교 점호 이전 08:10-08:20
	l층	각 부장	① 현관 정리 ② 숙소 환경상태	(3) 수 시
기숙사 생활구역	2층	각 부장	④ 절전·절수·소등	07:10-08:00
	3층 (창의관)	각 부장	⑤ 쓰레기 처리 ⑥ 빨래감 처리	18:30-21:00

제12조(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

- 1. 기숙사 응급환자 발생 시 당일 근무자는 즉시 조치를 취하고 해당 학생 보호자와 총사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기숙사 응급환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한다.

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화재 및 재난	부안소방서	580-1232	
와새 및 새딘	119	(국번없이)119	
	응급의료안전 센터	(국번없이)1339	
	줄포소방대	063-582-4464	
안전 및 응급상황	보건소	063-580-4559	
0800	부안성모병원	063-581-5100	
	응급실	063-580-8119	
	112,119	(국번없이) 112, 119	
위험 상황	부안경찰서	063-580-0257	
	줄포치안 센터	063-582-0112	
보안 및	캡스 경비 업체	1588-6400	
전기관리	(유)그린전기관리 공사	010-2229-0286	

제13조(기타)

- 1. 기숙사 내 설치된 안내판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감의 지시 사항 등 각종 안내 및 전달 사항 숙지
- 2. 등·하교 시 용모·복장 단정
- 3. 입실 및 퇴실 시간 준수
- 4. 기숙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 금지
- 5. 입 · 퇴사 등 특별한 경우 이외 보호자의 호실 출입 금지
- 6. 휴관: 명절의 연휴 기간과 3일 이상의 휴업 또는 휴교일 경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중 일주일 이상(청소와 소독 등을 위해서)
- 7. 아침 식사: 7시 55분, 저녁 식사: 6시 40분 배식 종료
- 8. 학교 일과 중 기숙사 출입을 금지하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감 동행하에 출입 가능
- 9. 방과 후 교육 활동 시간 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 중 발생한 환자는 담임교사(또는 해당 교과 교사) 승낙을 받은 후 사감에게 신고 후 입실
- 10. 휴대폰 등의 충전은 기숙사 내에서만 가능하고, 등교 시에는 전원 차단
- 11.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또는 명시된 내용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학생 자치회 및 사감회의 협의를 거쳐 기숙사운영위원회 회의로 결정 또는 개정 가능